

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
번호

8-51

제출년월일 : 2018. 10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안산시의 대표성 있는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의 대표가 지속적으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민선7기의 중점적인 정책과제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의·의결 기능 구체화
- 다양한 노사관계 기관·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노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위원 정수 증원
-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삭제하여 법체계 정비

주요내용

-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설치근거 신설(안 제3조제1항)
- 협의회 위원의 임기(2년) 및 연임관련 조항 신설(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)
- 상위법(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) 규정된 조항은 삭제(안 제3조제4항)
- 인적 자원개발과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정책사항을 협의·의결(안 제4조제2호)
-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(안 제8조 제2항)
-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지급.(안 제10조)

- 개정조례안 : 붙임1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-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-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 - 입법예고 : 2018. 8. 20. ~ 2018. 9. 10. (21일간)
- 기타 참고사항
 - 현행조례 : 붙임4
 - 방침결정문 : 붙임5

< 불임 1 >

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삭제하고, 제3조를 제4조로 하며,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노사민정협의회) ① 시장은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제1항에 따라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노동단체 대표자, 사용자 단체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직에 있는 기간 동안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종전의 제3조)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인적 자원개발과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정책사항

제8조제2항 중 “10명”을 “15명”으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수당 등)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일자리정책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노동정책팀장 손상경
	담당자 성명·전화	권형은 (행정 2283)

< 불임 2 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〈신 설〉</p> <p>제3조(기능)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고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의결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. ~ 6. (생 략) <p>제4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,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. 시의원 또는 공익적 성격의 주민을 대표하는 자 4. 시 고용정책담당국장 및 노동업무담당본부장 5.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6.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	<p>제3조(노사민정협의회) ① 시장은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노동단체 대표자, 사용자 단체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직에 있는 기간 동안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③ “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”</p> <p>제4조(기능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인적 자원개발과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정책사항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〈삭 제〉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④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.</p> <p>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제8조(실무협의회) ① (생 략)</p> <p>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1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 <p>제10조(수당 등)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등 그밖 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
	<p>제8조(실무협의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15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수당 등)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

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8-51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. 10. 25.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명확히 하고 노사민정협의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함.

□ 주요골자

-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.(안 제3조제2항)
- 노사민정협의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함 (안 제3조의2)

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 중 “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 을 “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중 “노동단체 대표자, 사용자 단체 대표자” 를 “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”으로 한다.

안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존속기한)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31일로 한다.

안 제4조 중 “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고 한다)” 를 “협의회”로, “협의·의결한다” 를 “심의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여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영 제2조제5항에서 정하는사항
4.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사항

신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3조(노사민정협의회) ① 시장은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, 다만 노동단체 대표자, 사용자 단체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직에 있는 기간 동안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③ “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노사민정협의회) ① --- 은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한다) --- .</p> <p>② --- .</p> <p>---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--- .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	<p>제3조(노사민정협의회) ① --- .</p> <p>--- .</p> <p>--- .</p> <p>--- .</p> <p>제3조의 2(존속기한)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.</p>
<p>제3조(기능)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고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의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역 노동복지와 지역노동 및 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2.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 및 	<p>제4조(기능)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고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의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역 노동복지와 지역노동 및 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2.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 및 	<p>제4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영 제2조제5항에서 정하는 사항 2. 지역 노동복지와 지역노동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	<u>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</u>	<u>및 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</u>
3. 각 경제주체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과 사명 등 사회적 협 약에 관한 사항	3. (생 략)	3. (개정안과 같음)
4. 지역경제발전 및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	<u>4. 지역경제발전 및 노사협력</u> <u>증진에 관한 사항</u>	<u>4.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</u>
5.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항		
6. 기타 노동, 경제,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	5. · 6.(생 략)	5. · 6.(개정안과 같음)